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1월 30일

권유자: 성명: (주)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전화번호: 02-6355-8908

작성자: 성명: 허동현
부서 및 직위: 미래에셋자산운용(주) REITs운용본부 매니저
전화번호: 02-6355-890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미래에셋글로벌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11월 30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12월 15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12월 0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제2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승인			
<input type="checkbox"/>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nput type="checkbox"/>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nput type="checkbox"/> 이사의선임			
<input type="checkbox"/>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미래에셋글로벌 별위탁관리부동 산투자회사	0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케이비증권(주)	최대주주	보통주	2,760,000	9.50	최대주주	-
계		-	2,760,000	9.5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허동현 (미래에셋자산운용(주))	0	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정재우 (미래에셋자산운용(주))	0	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이상연 (신한아이타스(주))	0	0	사무수탁회사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해당없음	개인	-	-	해당없음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2월 05일	2022년 12월 14일	2022년 12월 1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0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2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2년 12월 05일 9시 ~ 2022년 12월 14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미래에셋 글로벌리츠	http://www.globalreit.miraeasset.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DART 공시

위임장 우편회신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타워 20층

신한아이타스 대체투자사업부 이상연 과장(우: 07325)

-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22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A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2년 12월 05일 ~ 2022년 12월 14일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서면투표 방법	<p>1) 주주총회 부의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globalreit.miraeasse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2) 의결권표시 방법 : 보내드린 의결권 행사양식의 ‘의사표시’란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 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p> <p>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p> <p>4)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2년 12월 14일(수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 송부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20층 신한아이타스(주) 대체투자사업부 이상연 (우: 07325)</p> <p>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 및 전자투표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p>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p>□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주주총회 운영 안내</p> <p>주주들께서는 가급적 총회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중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기 2022년 09월 30일 현재

제1기 2022년 0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말	제 1(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8,037,635,812	10,693,845,32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237,727,955	8,890,332,297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64,647,731	639,284,606
3. 기타유동자산	1,553,493,830	673,631,002
4. 당기법인세자산	581,766,296	490,597,424
II. 비유동자산	350,842,535,818	301,173,540,406
1. 투자부동산	328,319,153,207	279,862,606,464
2. 관계기업투자	22,363,066,668	21,174,299,327
3. 파생상품자산	160,315,943	136,634,615
자 산 총 계	368,880,171,630	311,867,385,735

과 목	제 2(당) 기말	제 1(전) 기말
부 채		
I. 유동부채	6,778,225,058	3,527,560,968
1. 기타지급채무	5,932,424,363	3,488,483,839
2. 기타유동부채	672,921	567,865
3. 파생상품부채	845,127,774	38,509,264
II. 비유동부채	213,358,890,692	168,990,747,548
1. 장기차입금	199,521,851,765	168,057,873,999
2. 파생상품부채	13,837,038,927	932,873,549
부 채 총 계	220,137,115,750	172,518,308,516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48,433,954,077	139,043,725,581
1. 자본금	29,060,000,000	29,060,000,000
2. 기타불입자본	114,291,027,249	114,291,027,249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73,880,928	896,184,084
4. 이익잉여금(결손금)	(5,090,954,100)	(5,203,485,752)
II. 비지배지분	309,101,803	305,351,638
자 본 총 계	148,743,055,880	139,349,077,219
부채 및 자본 총계	368,880,171,630	311,867,385,73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기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제1기 2021년 05월 2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I. 영업수익	11,321,452,186	8,273,968,359
II. 영업비용	7,475,875,722	11,475,407,825
III. 영업이익(손실)	3,845,576,464	(3,201,439,466)
1. 금융수익	6,312,840	173,987,703
2. 금융비용	2,511,569,670	2,175,729,293
3. 기타수익	24,420,054	6,342,012
4. 기타비용	10,122,154	692,670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54,617,534	(5,197,531,714)
V. 법인세비용	-	-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VI. 당기순이익(손실)	1,354,617,534	(5,197,531,714)
VII. 기타포괄손익	9,277,696,844	896,184,084
1. 파생상품평가손익	1,708,614,102	305,541,824
2. 해외사업환산손익	(13,712,130,976)	(970,035,725)
VI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1,281,213,718	1,560,677,985
IX. 당기순이익의 귀속	10,632,314,378	(4,301,347,63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1,332,105,910	(5,203,485,752)
X.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22,511,624	5,954,03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10,609,802,754	(4,307,301,668)
IX. 주당손익	22,511,624	5,954,038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손실)		
	47	(377)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당) 기 : 2022년 09월 30일 현재

제 1(전) 기 : 2022년 03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2(당) 기말	제 1(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6,853,728,970	3,543,363,518
1. 현금및현금성자산	5,613,247,420	2,801,064,134
2. 기타채권	1,239,951,000	741,960,144
3. 당기법인세자산	530,550	339,240
II. 비유동자산	141,349,916,370	141,329,985,607
1. 종속기업투자	119,998,895,220	119,998,895,220
2. 관계기업투자	21,351,021,150	21,331,090,387
자 산 총 계	148,203,645,340	144,873,349,125
부 채		
I. 유동부채	539,849,798	297,926,935
1. 기타지급채무	539,849,798	297,926,935
II. 비유동부채	-	-

과 목	제 2(당) 기말	제 1(전) 기말
부 채 총 계	539,849,798	297,926,935
자 본		
Ⅰ. 자본금	29,060,000,000	29,060,000,000
Ⅱ. 기타불입자본	114,291,027,249	114,291,027,249
Ⅲ. 이익잉여금(결손금)	4,312,768,293	1,224,394,941
자 본 총 계	147,663,795,542	144,575,422,190
부채 및 자본 총계	148,203,645,340	144,873,349,125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당) 기 :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제 1(전) 기 : 2021년 05월 2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Ⅰ. 영업수익	4,900,264,493	2,541,623,239
Ⅱ. 영업비용	602,358,840	978,578,032
Ⅲ. 영업이익	4,297,905,653	1,563,045,207
1. 금융수익	3,660,134	2,540,010
2. 금융비용	-	341,917,808
3. 기타수익	6,381,823	1,342,107
4. 기타비용	-	614,575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307,947,610	1,224,394,941
Ⅴ. 법인세비용	-	-
Ⅵ. 당기순이익(손실)	4,307,947,610	1,224,394,941
Ⅶ. 기타포괄손익	-	-
Ⅷ. 당기총포괄이익(손실)	4,307,947,610	1,224,394,941
Ⅸ.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손실)	148	8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당)기	2022년 04월 01일 부터 2022년 09월 30일 까지	제1(전)기	2021년 05월 21일 부터 2022년 03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12월 15일	처분확정일	2022년 5월 25일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당기)		제 1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312,768,293		1,224,394,941
1. 전기이월잉여금(결손금)	4,820,683		-	
2. 당기순이익	4,307,947,610		1,224,394,94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307,947,610		1,219,574,258
1. 배당금	4,307,947,610		1,219,574,258	
보통주 주당배당금(율)				
당기: 148원(14.82%)	4,307,947,610		1,219,574,258	
전기: 42원(4.2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20,683		4,820,683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제3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 120만원 (월 2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60만원 (월 10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대표이사 : 180만원 (월 3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무보수
최고한도액	대표이사 : 180만원 (월 30만원) 기타비상무이사 : 무보수

※ 기타 참고사항

- 취임일 및 보수 승인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는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제3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90만원 (월 15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0만원 (월 25만원)
최고한도액	150만원 (월 25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취임일 및 보수 승인일이 속하는 해당월은 보수를 1개월분을 지급하며, 퇴임일이 속하는 해당월에는 보수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에게는 보수 이외의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사의 선임

제5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광운	1979.1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1)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허광윤	부동산업	2020.07~현재	삼창감정평가법인	해당사항 없음
		2015.06~2020.07	하나은행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허광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부동산업 전문가이자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고자: 허 광 윤(서명 또는 날인)



제3-15조(참고서류) 제 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권유자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회사, 그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반대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할 수 있다.

3.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사항

나. 후보자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 후보자인지 여부

다. 후보자의 추천인 및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라. 후보자와 해당 법인과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이 경우의 거래내역은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법률고문계약, 회계감사계약, 경영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후보자가 동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또는 동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사무소 등에 동 계약 등의 계약기간 중 근무한 경우의 계약 등을 말한다)으로 하되 약관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행하는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마. 후보자(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의 직무수행계획

확인서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2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관련 규정

□ 제 53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총회의 결의, 제50조 제5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초과배당 할 수 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초과배당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 54조 (이익배당의 지급)

①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사는 이익 배당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나 제50조 제6항 또는 제53조 제3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당금 지급 내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상의 4,307,947,610원을 주주에게 현금배당함.

○ 배당금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당기)	2022년 04월 01일 부터 2022년 09월 30일 까지	제1(전기)	2021년 05월 21일 부터 2022년 03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12월 15일	처분확정일	2022년 5월 25일

주식회사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당기)		제 1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312,768,293		1,224,394,941
1. 전기이월잉여금(결손금)	4,820,683		-	
2. 당기순이익	4,307,947,610		1,224,394,94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307,947,610		1,219,574,258
1. 배당금	4,307,947,610		1,219,574,258	
보통주 주당배당금(율)				
당기: 148원(14.82%)	4,307,947,610		1,219,574,258	
전기: 42원(4.2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820,683		4,820,683

제6호 의안: 제4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목 적

- 당사의 제4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관련규정

-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4기 사업계획의 요약

(단위: 천원)

구분	제4기(E)
영업수익	5,088,787
영업비용	(566,930)
영업이익	4,521,857
당기순이익	4,544,706
배당금총액	4,544,706

* 배당금총액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익배당 시,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

* 상기 사업계획은 금리 등 시장상황 및 리츠의 운용,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함.

□ 정관의 변경

제7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p>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p> <p>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p>	<p>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p> <p>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p>
<p>②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p>	<p>②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p>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7.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p> <p>(신 설)</p>	<p>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7.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단,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않고 이 정관 제38조 제3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한다.)</p> <p>제46조의2(전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295,3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295,300,000,000]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42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 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이 정관은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